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표창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43
------------	-------

발의연월일 : 2019. 8. 5.

발의자 : 표창원 · 송기현 · 김병기  
정재호 · 박정 · 박찬대  
어기구 · 김상희 · 이원욱  
노웅래 · 임종성 · 신창현  
위성곤 · 심재권 · 김철민  
김영춘 · 심기준 · 맹성규  
김정호 · 서영교 의원  
(20인)

### 제안이유

어린이들은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함.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매년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소수의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또한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응급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등 일부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안 제4조 및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7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들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소 중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관하여 우선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점검, 시행 결과의 제출·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등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즉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의 위해성

또는 어린이가 왕래하는 시설·구조물의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과 시간, 주기,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장 벌칙

제18조(벌칙)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